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활시설 설치 등의 의무화〉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0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233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재활시설 설치 등의 의무화(안 제31조제1항)	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0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5.
3.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의 의무화(안 제31조제1항)

개정안은 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u>수행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 ----- ----- ----- ----- -----수행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31조제1항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재활시설의 설치는 재량 사항으로 재활시설 중 의료재활시설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상황임.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2014년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설치되어 카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하다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²⁾ 중에 있음.

-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 현황>

기관명	국립교통재활병원	의료기관종별	병원
설립주체	국토교통부	개원일	2014.10.01.
설립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지원)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진료과목	□ 총 8개 진료과 운영 중 ■ (상 설) 재활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 (비상설)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병상	□ 허가병상수: 총 273병상 (7개 병동, 재가적응훈련관 2병상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반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예산에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재활시설의 설치와 재활사업의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여 이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을 의무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첫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규모는 2,675억원(2024년 기준)으로 피해자지원, 정부보장사업,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는데, 현행법 제39조의12³⁾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사용용도로

재활시설의 설치, 재활시설·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기금 설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둘째, 현재 의료재활시설은 운영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은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사고 후휴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체계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재활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는 그 발생 원인과 양상이 다른 장애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고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적 충격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 수행 의무화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장애 발생 원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휴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⁴⁾되므로, 현재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직업재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활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와 고용노동부(근로장애인 전환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훈련의 지원대상이 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하기 적합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작업장(701개소, 17,747명), 근로사업장(76개소, 3,131명), 직업적응훈련시설(38개소, 883명)이 운영 중에 있음(참고1 참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은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한국폴리텍대학(22개소), 민간훈련기관(1유형 23개소, 2유형 19개소) 등에서 직업능력 개발이나 훈련을 수행하고 있음(참고1 참조).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훈련 >

	구분	사업 내용
보건 복지 부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상임금 지급 등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적응훈련시설
고용 노동 부	직업능력개발 원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으로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구분	사업 내용
	디지털훈련센터	4차 산업혁명 대비 장애인 디지털 역량개발을 통한 IT분야 인력 양성(수준별 훈련, 맞춤형훈련 등 실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된 직업체험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운영
	공공훈련지원	폴리텍대학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 및 담당 교수 지원
	민간훈련지원 (1유형)	민간훈련기관에서 장애인 전용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원
	민간훈련지원 (2유형)	장애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급
	디지털능력개발원	직업생활 및 인문사회계열(취업전략, 인권교육, 산업안전 등), 기능계열(정보기술, 전자 등 해당 분야의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사이버훈련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수정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20년~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33.8~36.4%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추가 설치만으로는 장애인 고용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⁵⁾ >

(단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내용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책 환경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재활시설의 의무적 설치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 다른 부처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장애인 고용 향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내용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 또한 정책 환경,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처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종류)**

(‘24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목적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상임금 지급 등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사회적응훈련 등 실시
이용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비율 80% 이상)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비율 60% 이상)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중증비율 100% 이상, 발달장애 비율 80% 이상)
시설 수	815개소	701개소	76개소	38개소
총 근로인원	22,145명	18,003명	3,259명	883명
이용장애인	21,761명	17,747명	3,131명	883명
비장애인	384명	256명	128명	-

자료: 국토교통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 전국 38개 훈련인프라에서 직접훈련, 디지털능력개발원에서 사이버훈련, 공공(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 실시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직업지도),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공단 직접훈련	직업능력개발원 (6개소)	- 경기남부,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함평) -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으로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복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디지털훈련센터 (13개소)	- 서울, 부산, 광주, 구로, 판교, 인천,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일산, 대구, 대전 - 4차 산업혁명 대비 장애인 디지털 역량개발을 통한 IT분야 인력 양성(수준별 훈련, 맞춤형훈련 등 실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9개소)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감 있게 구성한 직업체험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제공 및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운영
공단 지원훈련	공공훈련지원 (22개소)	- 한국폴리텍대학 - 폴리텍대학 재학 중인 장애인 훈련생 및 담당 교수 지원
	민간훈련지원 (1유형 23개소)	- 민간훈련기관에서 장애인 전용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원
	민간훈련지원 (2유형 19개소)	- 장애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및 훈련생의 훈련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관, 안마수련원, 장애인단체(시각장애인 전문과정 지원비율 90%)
사이버 훈련	디지털능력개발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임용대비 준비과정 - 직업생활 및 인문사회계열(취업전략, 인권교육, 산업안전 등), 기능계열(정보기술, 전자 등 해당 분야의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사이버훈련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2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추진 경과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법적 근거 마련('02.1)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 「재활시설 부지선정에 따른 수지분석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09.11) 및 직업재활시설 부지** 매입('09~'11)
 - * 직업재활 전 과정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훈련, 고용 등) 운영 방안 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경기도 양평 재활시설 부지 내 14,966㎡, 매입금액 2,694백만원 (병원부지 76,008㎡)
- 직업재활시설 타당성분석 연구 용역 ('13.12.1~'14.12, 교통안전공단)
 - * 현재 노동부 등에서 운영 중인 일반 재활시설사업과 중복을 최대 배제하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에 특화된 재활훈련시설 축소 및 건립비용 절감 방안 제시
- 직업재활시설 건립방안 국토교통부 장관 방침 결정 ('15.4.7)
- 직업재활시설 건립추진단(TF) 구성·운영 (교통안전공단, '15.7.13)
 - 직업재활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위탁운영자 선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재활시설 연구용역 수행(교통안전공단, '16.2.24)
-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예산 미반영에 따른 업무 종료 (교통안전공단, '16.12.8)
 - (공단·국토부) '17년 사업예산*(안) 마련 및 기재부 제출(7월)
 - * 설계비 4.14억원, 관리운영비 8.06억원 등 합계 12.2억원
 - (기재부) 직업재활시설 건립 사업예산을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미반영 상태로 국회 이송(9.30)
 - (국토위) 시민단체 의견 등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비 12.2억원 전액 재반영(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10.28)
 - (예결위 및 본회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건립예산 12.2억원 전액 미반영(12.3)